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004번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울	소계			53,344.96	57,181.75							53,344.96
	기타시설	1	다툼 없는 시설물	17,378.00	17,378.00							17,378.00
	건축물	2	사 택	-	3,836.79		1.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2.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 제18호증(위성사진), 건축물대장(갑 제31호증)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
		3	합숙소	-			1.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제18호증, 갑제31호증	당초 원고가 주장한 1,465.05㎡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상동	-
		4	다툼없는 건축물	35,966.96	35,966.96							35,966.96
	소계			466,731.99	122,162.60							509,575.80
		1	다툼없는 시설물									
		2	잔교도크	-	5,562.00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2015. 4. 10. 준비서면(사진1), 갑라제1호증9(신고서일련번호74번)	잔교도크 면적을 5,562㎡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이면 연면적 산정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함.	5,56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3	다툼없는 인공시설	395,525.00	0.00		법면,옹벽,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	2012. 4.4.자 의견서 참조,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함.		원고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로 특정됨.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395,525.00
		4	SL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43.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043.96㎡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 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 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수조", 펌프장치(STRUCTURE)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 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5	CW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3.갑라제1호증의 14(추가63번)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3㎡였다가 비과세 주장.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		상동	0
		6	냉각수배수관1호기		220.86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00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20.86으로 수정하였음.	2015. 7. 2.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 갑라제1호증의10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다만 면적은 220.28㎡ 인정.	220.2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열람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7	냉각수배수관2호기		284.81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4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84.81로 수정하였음.	상동	상동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284.81
		8	송수관		495.13	불특정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 4.23.~5.8.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km,2km)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		상동	495.13
		9	송수관		600.55	불특정	상동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km,3km)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		상동	600.55
		10	송수관		129.00	불특정	상동	상동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상동	129.00
		11	송수관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 또한, 직경1.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		상동	240.00
		12	송수관		48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		상동	480.00
		13	송수관		884.6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1.52m,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		상동	884.6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원고, 보조참가인 입증자료	피고 주장	피고 입증자료	법원의 판단 내용	법원의 판단 인정 면적(㎡)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서천		14	송수관		2,399.7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2.81m,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		상동	2,399.74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12,729.59	불특정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상동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상동	12,729.59
	기계장치	15	기계장치		3,399.6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갑라제1호증11(신고서일련번호 95번), 갑라제3호증의1내지7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		상동	3,399.60
		16	기계장치		308.31	불특정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31이나, 피고기준의 면적은 1,096.71 (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인도구간면적 788.4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3호증1내지7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상동	308.31
		17	탈황폐수처리조		723.0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35), 갑라제4호증2	종합폐수처리장(950.48㎡)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에 대한 증빙이 없음.		상동	723.00
		18	종합폐수처리조		950.48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4~55번), 갑라제4호증3	폐수처리장(723㎡)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		상동	950.4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		9,102.32	불특정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 (세부내역)		상동	9,102.32
	수조	19	다툼 없는 수조	3,780.00	3,780.00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 해당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서 원고는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므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800이였으나, 사업장 조사 후 3,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
		20	다툼 없는 수조	4,200.00	4,200.0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3	상동		상동	-
		21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131.22	131.22		기신고 면적은 187.5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1	침전조의 경우,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		상동	-
		22	수조(SLP)		1,200.00		기신고면적	갑라제1호증12(신고서일련번호 98번)	SLP의 경우,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1,20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3	수조(조절지)		432.00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 갑라제4호증의2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32.00
		24	수조(SLP 취수로)		1,096.31		1. 기신고 면적 2. 2012.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추가된 항목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8,59번), 갑라제4호증3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1,096.31
		25	수조(CWP STRUCTURE)		446.3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2,53번), 갑라제4호증3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446.30
			다툼없는 수조		8,849.21	불특정	1.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2.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 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갑라제4호증의1내지3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8,849.21
	건축물	26	애쉬사일로차량실1층		201.88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사진2, 갑라제5호증1내지2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 또한,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		건축물로 인정	201.88
		27	애쉬사일로차량실2층		201.8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88
		28	한전산업사무실		18.00		2004년도 미임대, 증빙서류는 중부발전 내부문건으로 서천군이 증명할 대상이 아님	2005년부터 임대	2005년부터 임대시 임대계약서 등 증빙필요.		임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음	18.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9	석회석사일로지지대		-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 (삭제면적:143.20)	사진3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			
		30	다름 없는 건축물	63,095.77	63,095.77							63,095.77
양양	소계			7,289.64	51,016.14							7,289.64
	건축물	1	다름 없는 건축물	7,289.64	7,289.64							7,289.64
	저장소	2	하부댐									
	시설물	3	시설물		43,726.50		어도, 진입도로(하부댐,발전소), 진입터널도 포함되어야 함	"갑다 제6호증 1내지 5"(2012.08.13) "갑다 제13호증 "(2013.05.08) "갑다 제14호증","갑다 제15호증 1내지3" 및 "갑다 제16호증 1내지3'(2013.05.08)	어도 320㎡는 댐체로 보아 2004년~2006년 과세대상. *진입도로(하부댐,발전소) 13,048㎡는 구내의 도로로 볼수없고,구외도로까지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할 경우 보령시 240,000㎡가 추가 포함되어야함. *진입터널 11,865㎡는 경비초소 밖에 있어 사업장면적포함대상 아님. *작업터널(1,2,5) 16,303.5㎡는 공사시공 위한 시설로 이용되다 공사후 폐쇄한 시설로 폐쇄년도 확인불가임. *작업터널(3) 2,190㎡는 공사장진입시설로 사용된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06년도까지 과세대상임.	참고자료21: 행자부심사 2002-120(2002.3.25) 을제72호증1내지2 을제73호증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외함.	0
인제	소계			93.22	93.22							93.22
	건축물	1	다름없는 건축물	93.22	93.22	0						93.22
인천	소계			91,080.44	91,080.44							91,080.44
	건축물	1	다름 없는 건축물	52,378.54	52,378.54							52,378.54
	시설물	2	다름 없는 시설물	38,701.90	38,701.90							38,701.90
	소계			38,023.83	38,023.83							38,023.83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열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제주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30,630.50	30,630.50								30,630.50
	시설물	2	다툼 없는 시설물	7,393.33	7,393.33								7,393.33
보령(피고)	전 체			3,877,373.88	480,386.61								1,099,535.90
합계	전 국			4,533,937.96	839,944.59	-	-	-		-	-	-	1,798,943.79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illegible]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울	소계			56,041.45	57,181.75							53,344.96
	기타시설	1	다툼 없는 시설물	17,378.00	17,378.00							17,378.00
	건축물	2	사 택	-	3,836.79		1.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2.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 제18호증(위성사진), 건축물대장(갑 제31호증)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 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
		3	합숙소	-			1.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제18호증, 갑제31호증	당초 원고가 주장한 1,465.05㎡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상동	-
		4	다툼없는 건축물	38,663.45	35,966.96						원고가 인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5,966.96
	소계			465,864.49	121,310.36							508,690.30
		2	잔교도크		5,562.00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2015. 4. 10. 준비서면(사진1), 갑라제1호증의 9(신고서일련번호74번)	잔교도크 면적을 5,562㎡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이면 연면적 산정 대상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정함.	5,562.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3	다툼없는 인공시설	395,525.00	0.00		법면,옹벽,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	2012. 4.4.자 의견서 참조,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불가함.		원고보조참가인 제출 증거로 특정됨. 사용계약서의 존부와 관계없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395,525.00
		4	SL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43.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043.96㎡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 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 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수조", 펌프장치(STRUCTURE)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 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5	CW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견임 3.갑라제1호증의14(추가63번)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3㎡였다가 비과세 주장.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다툼없는 시설			불특정	특정되지 않음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6	냉각수배수관1호기		220.86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0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20.86으로 수정하였음.	2015. 7. 2.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 갑라제1호증의10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다만 면적은 220.28㎡ 인정.	220.28
		7	냉각수배수관2호기		284.81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4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84.81로 수정하였음.	상동	상동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284.81
		8	송수관		495.13	불특정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 4.23.~5.8.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2㎞)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		상동	495.13
		9	송수관		600.55	불특정	상동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3㎞)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		상동	600.55
		10	송수관		129.00	불특정	상동	상동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상동	129.00
		11	송수관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 또한, 직경1.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		상동	240.00
		12	송수관		48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		상동	48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천		13	송수관		884.6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1.52m,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		상동	884.64
		14	송수관		2,399.7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2.81m,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		상동	2,399.74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12,729.59	불특정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상동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상동	12,729.59
	기계장치	15	기계장치		3,399.6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갑라제1호증11(신고서일련번호 95번), 갑라제3호증의1내지7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		상동	3,399.60
		16	기계장치		308.31	불특정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31이나, 피고기준의 면적은 1,096.71 (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이어 벨트-인도구간면적 788.4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3호증1내지7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상동	308.31
		17	탈황폐수처리조		723.0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35), 갑라제4호증2	종합폐수처리장(950.48㎡)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에 대한 증빙이 없음.		상동	723.00
		18	종합폐수처리조		950.48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4~55번), 갑라제4호증3	폐수처리장(723㎡)과 중복여부 등 증빙없어 확인 안 됨.		상동	950.48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		9,102.32	불특정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상동	9,102.32
	수조	19	다툼없는수조(SLP)	3,780.00	3,780.00	불특정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 해당 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서 원고는 해당 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므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80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3,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볼 증거가 부족함.	-
		20	다툼없는수조(SLP)	4,200.00	4,200.00	불특정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3	상동		상동	-
		21	다툼없는저탄장침전조	131.22	131.22	불특정	기신고 면적은 187.5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1	침전조의 경우,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		상동	-
		22	수조(SLP)		1,200.00	불특정	기신고면적	갑라제1호증12(신고서일련번호 98번)	SLP의 경우,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1,20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3	수조(조절지)		432.00	불특정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 갑라제4호증의2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32.00
		24	수조(SLP 취수로)		1,096.31	불특정	1. 기신고 면적 2. 2012.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8,59번), 갑라제4호증3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1,096.31
		25	수조(CWP STRUCTURE)		446.3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2,53번), 갑라제4호증3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		인위적 설치한 시설물로 인정	446.30
			다툼없는 수조		8,882.47		1.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2.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갑라제4호증의1내지3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8,849.21
	건축물	26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201.88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사진2, 갑라제5호증1내지2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 또한,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		건축물로 인정	201.88
		27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201.8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88
		28	한전산업사무실		-		2005년부터 임대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9	석회석사일로지지대		-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 (삭제면적:143.20)	사진3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			
		30	다툼없는 건축물	62,228.27	62,228.27							62,228.27
양양	소계			89,381.08	89,381.08							89,381.08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12,145.28	12,145.28	0.00						12,145.28
	저장조	2	하부댐,유수지	34,616.29	34,616.29	0.00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 해당함.	34,616.29
	시설물	3	다툼 없는 시설물	42,619.51	42,619.51	0.00						42,619.51
	소계			249,849.22	277,508.52	27,659.30	-	-	-	-	-	259,628.52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인제	저장조	1	다툼없는 상부댐유수지	200,000.00	200,000.00	0	-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 -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 -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참고자료 4-1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시설하여 '수조'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수조'로 볼 수 없음. 특히, 2004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 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수조'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 시설물로서 2004년~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시에도 존재(2,569,690.25㎡)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	참고자료 11: 2008년 감심제180호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 해당함.	200,000.00
	도로	2	진입도로포장		17,880.00	17880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진입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2012. 3. 30.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2	진입도로는 한전이 지자체에 이관하여 준공하는 등 지자체가 관리하여 구내도로로 볼 수 없음.	2012.5.14.준비서면 참고자료 1-4: 상부댐진입도로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3	상부댐횡단도로		2,040.00	2040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상부댐횡단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상동	횡단도로의 경우 댐체 면적과 중복되어 제외되어야 함.	2012.5.14.준비서면 참고자료 1-6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	2,040.00
		4	다툼없는 상부댐체	41,640.00	41,640.00	0						41,640.0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원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	5	상부댐체옹벽		7,739.30	7739.3	물을 저장하기 위해 상부댐의 일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막은 시설물로서 전체면적이 49,379㎡이나 41,640㎡을 신고함. 나머지 7,739㎡도 추가로 포함해야 함.	2013. 6. 19.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1, 3-2	상부댐체를 당초 상부댐이라 하다가 이후 댐체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참고자료 1-6을 보면, 상부댐 전체면적이 49,379.82㎡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전체면적의 84%를 상회하는 41,640㎡를 댐체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자료 1-2자료에 의하면 상부댐의 경우 댐마루폭 10m이고, 댐길이 335m로 댐체면적은 3,350㎡임. 위 사항과 같이 상부댐체와 상부댐체 옹벽은 중복되는 면적임.	2012. 5. 14.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6	댐체와 별개 시설물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함.	7,739.30
		6	기타시설물	8,116.00	8,116.00	-						8,116.00
		7	다툼없는 건축물	93.22	93.22	-						93.22
인천	소계			100,151.67	100,151.67							100,151.67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63,768.78	63,768.78							63,768.78
	시설물	2	다툼 없는 시설물	36,382.89	36,382.89							36,382.89
제주	소계			43,724.57	43,724.57							43,724.57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35,745.68	35,745.68							35,745.68
	시설물	2	다툼 없는 시설물	7,978.89	7,978.89							7,978.89
보령	전 체		-	3,885,533.49	486,969.72							1,106,458.76
합계	전 국			4,890,545.97	1,176,227.67	27,659.30	-	-	-	-	-	2,161,379.8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울	소계			42,028.47	45,865.26							42,028.47
	건축물	1	사 택	-	3,836.79		1.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2.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 제18호증(위성사진), 건축물대장(갑 제31호증)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0
		2	합숙소	-			1.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제18호증, 갑제31호증	당초 원고가 주장한 1,465.05㎡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상동	0
		3	다툼없는 건축물	42,028.47	42,028.47							42,028.47
	소계			466,828.48	107,786.26	-	-	-	-	-	-	89,908.50
		1	다툼없는 시설물				특정되지 않음		당초 중부발전 신고 시설물로 이견이 없는 시설임.		오입력된 면적으로 삭제처리함	
		2	잔교도크		5,562.00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2015. 4. 10. 준비서면(사진1), 갑라제1호증9(신고서일련번호74번)	잔교도크 면적을 5,562㎡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3	다툼없는 인공시설	395,525.00	0.00		법면,옹벽,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	2012. 4.4.자 의견서 참조,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불가함.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4	SL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43.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043.96㎡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 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 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수조", 펌프장치(STRUCTURE)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 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		시설물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함.	0
		5	CW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3.갑라제1호증의 14(추가63번)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3㎡였다가 비과세 주장.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		상동	0
		6	냉각수배수관1호기		220.86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0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20.86으로 수정하였음.	2015. 7. 2.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 갑라제1호증의10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7	냉각수배수관2호기		284.81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4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84.81로 수정하였음.	상동	상동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급배수시설	8	송수관		495.13	불특정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 4.23.~5.8.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2㎞)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95.13
		9	송수관		600.55	불특정	상동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3㎞)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		상동	600.55
		10	송수관		129.00	불특정	상동	상동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상동	129.00
		11	송수관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 또한, 직경1.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		상동	240.00
		12	송수관		48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		상동	480.00
		13	송수관		884.6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1.52m,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		상동	884.64
		14	송수관		2,399.7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2.81m,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		상동	2,399.74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천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3,665.61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상동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그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기계장치	15	기계장치		3,399.60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갑라제1호증11(신고서일련번호 95번), 갑라제3호증의 1내지7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3,399.60
		16	기계장치		308.31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31이나, 피고기준의 면적은 1,096.71 (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인도구간면적 788.4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3호증1 내지7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상동	308.31
		17	탈황폐수처리조		723.00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 연번 35), 갑라제4호증2	종합폐수처리장(950.48㎡)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에 대한 증빙이 없음.		상동	723.00
		18	종합폐수처리조		950.48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 연번 54~55번), 갑라제4호증3	폐수처리장(723㎡)과 중복여부 등 증빙 없어 확인 안 됨.		상동	950.48
			다툼없는 기계장치		3,678.21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상동	3,678.2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수조	19	다툼 없는 수조	3,780.00	3,780.00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 해당시설물은 돌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서 원고는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므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80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3,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1호증2 내지4 갑라제4호증3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함.	0
		20	다툼 없는 수조	4,200.00	4,200.0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3	상동		상동	0
		21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131.22	131.22		기신고 면적은 187.5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1	침전조의 경우,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		상동	0
		22	수조(SLP)		1,200.00		기신고면적	갑라제1호증12(신고서일련번호 98번)	SLP의 경우, 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1,200.00
		23	수조(조절지)		432.00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 갑라제4호증의2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32.00
		24	수조(SLP 취수로)		1,096.31		1. 기신고 면적 2. 2012.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8,59번), 갑라제4호증3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1,096.3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25	수조(CWP STRUCTURE)		446.3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 연번 52,53번), 갑라제4호증3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46.30
			다툼없는 수조		8,882.47		1.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2.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수조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갑라제4호증의1내지3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8,849.21
	건축물	26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201.88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사진2, 갑라제5호증 1내지2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 또한,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		건축물로 인정	201.88
		27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201.8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88
		28	한전산업사무실		-		2005년부터 임대					
		29	석회석사일로지지대		-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 (삭제면적:143.20)	사진3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			
		30	다툼 없는 건축물	63,192.26	63,192.26							63,192.26
	소계			86,878.50	91,426.58							91,426.58
		1	다툼 없는 건축물	13,788.20	13,788.20	0.00						13,788.2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양양	건축물	2	지하발전소		4,548.08	4548.08	지하발전소 내 시설된 기계장치와 개폐장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갑다 제8호증"(2012.08.13)	양수발전소 홍보자료엔 2,400㎡로 홍보됨(폭20m,길이120m).2006년이후 6,948.08㎡로 증가된 증거 없음. -당초 안분계산시 2005년 2,400㎡, 2006년이후 6,948.08㎡로 안분계산. 홍보자료의 연면적 적용시 2006년 이후 4,548.05㎡는 제외되어야 함.	을제70호증	제출된 증거로 면적 인정함	4,548.08
	저장조	3	하부댐		-	0.00						-
	시설물	4	다툼 없는 시설물	73,090.30	73,090.30	0.00						73,090.30
	소계			250,113.57	274,423.90							46,763.57
인제	저장조	1	다툼없는 상부댐유수지	200,000.00	200,000.00	0	-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 -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 -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참고자료 4-1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시설하여 '수조'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수조'로 볼 수 없음. 특히, 2004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수조'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 시설물로서 2004년~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1.1이므로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 시에도 존재(2,569,690.25㎡)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	참고자료 11: 2008년 감심제180호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는 해당하나,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수조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0
	도로	2	진입도로포장		17,880.00	17,880.00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진입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2012. 3. 30.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2	진입도로는 한전이 지자체에 이관하여 준공하는 등 지자체가 관리하여 구내도로로 볼 수 없음.	2012.5.14.준비서면 참고자료 1-4: 상부댐진입도로설명서	원고가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3	상부댐횡단도로		2,040.00	2,040.00	원칙적으로 도로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상부댐횡단도로도 시설물에 포함됨	상동	횡단도로의 경우 댐체 면적과 중복되어 제외되어야 함.	2012.5.14.준비서면 참고자료 1-6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	4	다툼없는 상부댐체	41,640.00	41,640.00	-						41,640.00
		5	상부댐체옹벽		7,739.30	7,739.30	물을 저장하기 위해 상부댐의 일부분을 철근콘크리트로 막은 시설물로서 전체면적이 49,379㎡이나 41,640㎡을 신고함. 나머지 7,739㎡도 추가로 포함해야 함.	2013. 6. 19.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1, 3-2	상부댐체를 당초 상부댐이라 하다가 이후 댐체라 주장하는 상황으로 참고자료 1-6을 보면, 상부댐 전체 면적이 49,379.82㎡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전체면적의 84%를 상회하는 41,640㎡를 댐체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자료 1-2자료에 의하면 상부댐의 경우 댐마루폭 10m이고, 댐길이 335m로 댐체면적은 3,350㎡임. 위 사항과 같이 상부댐체와 상부댐체 옹벽은 중복되는 면적임.	2012. 5. 14.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6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6	다툼없는 시설물	4,888.35	4,889.38	- 1.03	주차장 면적 2,762㎡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시설물에 포함됨	참고자료 2-2	다툼없음			4,888.35
		7	기타시설물	3,350.00	-	3,350.00	피고가 댐체의 면적을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댐마루의 면적으로 착오하여 주장한 사항임	2013. 6. 19.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3-1, 3-2	당초 원고보조참가인이 댐체관련 면적이라고 주장하는 41,640㎡에 포함되는 면적(3,350㎡)으로 댐마루폭 10m, 댐길이 335m에 해당됨.	2012. 5. 14.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1-6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8	다툼없는 건축물	235.22	235.22	0						235.22
인천	소계			95,368.98	95,368.98							95,368.98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95,368.98	95,368.98							95,368.98
제주	소계			39,715.09	39,715.09							39,715.09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39,715.09	39,715.09							39,715.09
보령(피고)	전 체		-	3,927,623.13	460,856.18							459,981.66
합계	전 국			4,908,556.22	1,115,442.25	-	-	-	-	-	-	865,192.85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

전체 사업장 연면적 산정표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울	소계			42,033.35	45,870.14							42,033.35
	기타시설	1	다툼 없는 시설물	3,913.45	3,913.45							3,913.45
	건축물	2	사 택	-	3,836.79		1.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하였으므로 과세기준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2. 사택은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사택을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 제18호증(위성사진), 건축물대장(갑 제31호증)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주거전용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함.	-
		3	합숙소	-			1.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2. 합숙소는 서울화력 구내에 위치함. 서울시 담당자 변경으로 피고측과의 통화자 확인불가하며, 현 서울시 세무담당자는 발전소 구내의 합숙소를 과세기준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갑제18호증, 갑제31호증	당초 원고가 주장한 1,465.05㎡ 합숙소 건물로 발전소와 구분된 주거전용 시설임. 2012.2월경 서울시에서도 시설로 제외함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통화 됨.	을제16호증 1내지14, 을제38호증 1내지4	상동	-
		4	다툼없는 건축물	38,119.90	38,119.90							38,119.90
	소계			63,608.56	106,452.36							85,224.11
		1										
		2	잔교도크	-	5,562.00		잔교도크의 구조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시설물	2015. 4. 10. 준비서면(사진1), 갑라제1호증9(신고서일련번호74번)	잔교도크 면적을 5,562㎡로 하면서 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없음.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0
		3	다툼없는 인공시설	-	0.00		법면,옹벽,호안은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피고 주장에 따를 경우 과세면적 증가되어야 함)	2012. 4.4.자 의견서 참조, 갑라제2호증의 1내지24	각 개별시설 명칭 및 증빙이 없고 특히 호안시설 등에 대한 사용계약서나 사용승인서 등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불가함.		상동	0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기타시설	4	SL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43.96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1,043.96㎡인 시설로 비과세 주장. 저장조에서 산출된 것과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음. 피고시의 산출방식은 취수장과 취수로는 "수조", 펌프장치(STRUCTURE)는 기계장치로 구분산출하여 중복이 아님. 서천군과 같은 유형에 대해 저장조와 기타시설로 중복하여 산출하고 있는 것임.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0	
		5	CWP STRUCTURE		0.00	불특정	1. 비과세시설물(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476.20이 추가 계상되어야 함) 2. 해당구조물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2004년 원고가 신고할 당시에도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음. 3. 서천군은 2012년에 실시한 사업장 면적 조사시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4. 보령시에서는 해당부분을 과세면적에 포함하여 서천군도 보령시 기준으로 면적을 계상하였음.	1.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2. 원고의 소장 p.22~23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의견임 3. 갑라제1호증의14(추가 63번)	당초 서천군이 주장한 면적이 446.3㎡였다가 비과세 주장.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됨.		상동	0	
		6	냉각수배수관1호기		220.86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 484.0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20.86으로 수정하였음.	2015. 7. 2.자 준비서면 첨부자료3), 갑라제1호증의10	세부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0	
		7	냉각수배수관2호기		284.81	불특정	당초 원고 신고면적은510.40 이였으나, 2012년 4월 현지 조사하여 확인한바, 284.81로 수정하였음.	상동	상동		상동	0	
		8	송수관		495.13	불특정	원고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2012. 4.23.~5.8.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계상한 면적으로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과 동일함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2㎞)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95.13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서천	급배수시설	9	송수관		600.55	불특정	상동	상동	회처리장 관로길이(1.6㎞,3㎞)입증 필요하며 사용용도가 구분 안되어 송수관 여부 판단 안됨.		상동	600.55	
		10	송수관		129.00	불특정	상동	상동	폐수처리장 관련 직경 3m의 송수관 입증자료 필요함. 화력발전소 송수관중 직경3m 송수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상동	129.00	
		11	송수관		24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보일러배수관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뤄진 급배수시설이지 송수관아님. 또한, 직경1.2m의 송수관입증자료 필요함.		급배수시설이 아닌 송수관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0	
		12	송수관		480.00	불특정	상동	상동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회처리배관에 대해 송수관이라 주장하나 회처리배관의 경우 생산시설로 볼 수는 있으나 송수관은 아님. 기존 면적과 중복여부 등 검토필요함.		송수관으로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물을 운반하는 송수관이 아닌 회처리배관으로 보인다.	0	
		13	송수관		884.6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1.52m, 길이 582m 시설입증필요.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0	
		14	송수관		2,399.74	불특정	상동	상동	2펌프장 관련 직경 2.81m, 길이 854m 시설입증필요.		상동	0	
			다툼 없는 급배수시설		3,666.61	불특정	급배수시설 관련 위 6번 내지 14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당초 원고가 신고한 과세대상 면적에서 상기 열거한 다툼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	상동	다툼없는 급배수시설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수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그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0	
	기계장치	15	기계장치		1,648.4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갑라제1호증11(신고서 일련번호 95번), 갑라제3호증의1내지7	기계장치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증빙이 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3,399.60	
		16	기계장치		308.31	불특정	추가 계상된 면적으로 서천군 기준은 308.31이나, 피고기준의 면적은 1,096.71 (차이면적은 기계장치 중 연번 27번 저탄장 컨베이어 벨트-인도구간면적 788.4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3호증1내지7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상동	308.31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illegible]	17	탈황폐수처리조		723.00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사업장 면적으로 기신고 부분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35), 갑라제4호증2	종합폐수처리장(950.48㎡)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고 723㎡에 대한 증빙이 없음.		상동	723.00
		18	종합폐수처리조		950.48	불특정	중부발전이 당초 저장시설로 기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 시 기계장비로 판단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저장시설 신고연번 54~55번), 갑라제4호증3	폐수처리장(723㎡)과 중복여부 등 증빙 없어 확인 안 됨.		상동	950.48
			다툼없는 기계장치		3,678.21	불특정	기계장치 관련 위 15번 내지 18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중부발전이 당초 신고한 면적과 2012년 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계상한 면적을 가감조정한 전체면적에서 위에 기술한 기계장치 다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다툼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특정이 필요(세부내역)		상동	3,678.21
		19	다툼 없는 수조	-	3,780.00		해당 POND는 우수저류공간 및 배수시설이 아닌 제2회처리장에서 물을 모아 정화한 후 펌프로 끌어올려 후문 밖에 있는 RETURN POND에 저장 후 펌프로 끌어올려 사업장내 있는 S/W TANK에 보관 후 회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수조에 해당. 해당시설물은 둘레를 철근콘크리트로 쌓은 구조로서 원고는 해당면적을 수조로 판단하여 과세면적으로 당초 신고하였으므로 다툼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당초 순번19번 수조는 신고면적 26,80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3,780으로 면적이 수정되었음.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1호증2내지4 갑라제4호증3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
		20	다툼 없는 수조	-	4,200.0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3	시설구조가 연못형태로 수조로 볼 수 없음.		상동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쟁점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수조	21	다툼 없는 저탄장침전조	-	131.22		기신고 면적은 187.50이였으나, 사업장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됨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갑라제4호증1	침전조의 경우,밑면과 옆면이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조로 볼 수 없음.		상동	-
		22	수조(SLP)	-	1,200.00		기신고면적	갑라제1호증12(신고서 일련번호 98번)	SLP의 경우,펌프기계장치로 분류되어야 하고 산출근거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1,200.00
		23	수조(조절지)		432.00		기 신고면적은 248이였으나, 사업장 조사 후 면적 좌측과 같이 수정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저장시설 신고연번 25번), 갑라제4호증의2	산출근거나 증빙없음.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32.00
		24	수조(SLP 취수로)		1,096.31		1. 기신고 면적 2. 2012.5월 사업장 면적 조사시 추가된 항목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저장시설 신고연번 58,59번), 갑라제4호증3	기타시설 SLP와 중복여부 등 산출근거와 증빙없어 확인 안 됨.		급배수시설이 아닌 수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그 면적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25	수조(CWP STRUCTURE)		446.30		상동	2012.5.16. 제출된 사업장 면적 자료 참조 (저장시설 신고연번 52,53번), 갑라제4호증3	CWP는 펌프류의 기계장치이며 타 기계장치와 중복여부 등 확인 안 됨.		제출된 증거로 시설과 면적이 특정됨.	446.30
			다툼없는 수조		8,882.47		수조 관련 위 19번 내지 25번 항목 이외 나머지 서천군의 과세면적	갑라제4호증의1내지3	다툼없는 수조에 대한 특정이 필요 (세부내역)		상동	8,849.21
	건축물	26	애쉬시일로차량실1층		201.88		건축물로 과세면적에 해당	사진2, 갑라제5호증1 내지2	애쉬사일로 받침대는 건축물이 아님. 또한,산출근거나 증빙이 없음.		건축물로 인정	201.88
		27	애쉬시일로차량실2층		201.8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01.88
		28	한전산업사무실				2005년부터 임대					0
		29	석회석사일로지지대		-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대상 면적에서 삭제함 (삭제면적:143.20)	사진3	석회석사일로 지지대를 건축물로 볼만한 근거없는 시설임.			0
		30	다툼 없는 건축물	63,608.56	63,608.56							63,608.56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양양	소계			15,507.69	40,120.07	-	-	-	-	-	-	20,055.77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13,107.69	13,107.69	0.00						13,107.69
		2	지하발전소	2,400.00	6,948.08		지하발전소 내 시설된 기계장치와 개폐장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갑 제8호증 "(2012.08.13)	양수발전소 홍보자료엔 2,400㎡로 홍보됨(폭20m,길이120m).2006년이후 6,918.08㎡로 증가된 증거 없음. -당초 안분계산시 2005년 2,400㎡, 2006년이후 6,948.08㎡로 안분계산. 홍보자료의 연면적 적용시 2006년 이후 4,548.05㎡는 제외되어야 함.	을제70호증	제출된 증거로 면적 인정함	6,948.08
	저장조	3	하부댐	-	320.00		수조에 해당되는 시설물임	"갑 제5호증의 1내지7"(2012.08.13)	어도는 댐체시설물로서 '수조'아니어서 2007년도 과세제외대상임.	참고자료 21 참고자료 11: 2008년감심제 180호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외함	-
	시설물	4	다툼 없는 시설물	-	19,744.30		저류보 면적이 포함되어야 함		저류보로 표기하고 있으나 저류보 전체 면적인지 제방면적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음. 제방개념의 면적은 2005년~2006년은 포함대상이나 2007년은 제외임.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소계			3,707.57	251,741.90	-	-	-	-	-	-	2,362.60
	건축물	1	다툼없는 건축물	235.22	235.22							235.22
	저장조	2	상부댐유수지		200,000.00		- 상부댐의 유수지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토지를 깊이 파는 등 인위적인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시설물임 - 댐의 유수지는 댐체와 더불어 전기생산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수조임 - 따라서 유수지는 시설물이며 수조이므로 안분대상에 포함해야 함	참고자료 4-1	2011년 댐유수지 둘레에 돌망태를 추가 시설하여 '수조'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심사결정서의 유수지와 유사한 것으로 '수조'로 볼 수 없음. 특히, 2004년~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에서2011년 추가로 시설한 것을 소급하여 '수조'라고 주장함은 논리상 맞지 않음. 시설물로서 2004년~2006년귀속분은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개정령 시행일이 2007.1.1이므로2007년도분은 제외대상임.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피고시에도 존재(2,569,690.25㎡)하고 있으므로 보조참가인 소재 댐유수지를 2007년도귀속 안분대상으로 삼는 다면 피고시 소재 면적도 안분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	참고자료 11: 2008년감심제 180호	댐이나 제방은 그 유수지를 포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구축물' 내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시설물'에는 해당하나, 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수조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지역	구분	순번	시설물명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법원의 판단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쟁점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주장	입증자료	주장	입증자료	내용	인정 면적(㎡)
인제	기타	3	상부댐체		41,640.00		양수댐중 상부댐의 실질적인 용도는 발전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로서 수조에 해당함	2012. 3. 30.자 준비서면 참고자료 2-2	감사원심사결정서상 수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로서 2007년는 제외대상임.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보령시에도 존재(2,569,690.25㎡)하고 있음.	참고자료 11: 2008년감심제 180호	상동	-
		4	상부댐체옹벽		7,739.30		양수댐중 상부댐의 실질적인 용도는 발전을 위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오로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로서 수조에 해당함	상동	감사원심사결정서상 수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로서 2007년는 제외대상임. 이와 유사한 공업용수 저수조 등이 보령시에도 존재(2,569,690.25㎡)하고 있음.	참고자료 11: 2008년감심제 180호	상동	-
		5	다툼없는 시설물	3,472.35	2,127.38		수로터널, 취수로 및 풍력발전기의 면적이 2,127.38로써 시설물에 해당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특정되지 않음		다툼없음.			2,127.38
인천	소계			104,460.80	104,460.80							104,460.80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67,632.57	67,632.57							67,632.57
	시설물	2	다툼 없는 시설물	36,828.23	36,828.23							36,828.23
제주	소계			39,783.03	39,783.03							39,783.03
	건축물	1	다툼 없는 건축물	28,673.47	28,673.47							28,673.47
	시설물	2	다툼 없는 시설물	11,109.56	11,109.56							11,109.56
보령	전 체		-	666,056.62	466,123.95							462,104.68
합계	전 국			935,157.62	1,054,552.25	-	-	#VALUE!	-	#VALUE!	-	756,024.34

. 끝.